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0.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7년 8월 30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30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7년 9월 5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가. 개정이유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과 우수인재 양성과 위원회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자치구세의 5%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안 제3조)
-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5조의2 신설)
-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행정직장으로 하고, 해촉 사유를 신설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안 제7조)
- 각 조문의 띄어쓰기와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동 조례 개정안 제3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한도)액을 현행 '해당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를 '자치구세 5%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것으로 2007년 우리 구의 자치구세는 837억 3천만원으로 현행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은 3%인 25억 1천만원이나, 개정안 5%로 상향 조정된다면 41억 8천만원으로, 지원 기준액이 현행대비 40%로 대폭 조정되는 것임.
-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지원 금액이 크며, 또한 우리 구 학생(초·중·고)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평균8만 5천원으로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참고로 현행조례는 우리 구 학생(초·중·고)1인당 지원 기준이 5만1천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아홉 번째에 해당됨.
-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세원이 불안정하고 등락폭이 큰 세외수입보다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을 꾀하는 차원으로,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 관악구도 자치구세의 5%를 기준액으로 하고 있음.
- 보조금 확대는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07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이 자치구세의 2%에 불과, 기존 기준액 3%를 채우지 못한 실정이고, 5%로 상향 조정 시 증액된 보조금만큼 발생한 자치구세 부족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안 제2조 제5호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안 제7조 제2항은 위원장 부재 시 실질적으로 심의를 대행하는 자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차원에서, 안 제7조 제5항은 위원 해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안 제5조의2는 동 조례 제9조 제3호에 대한 근거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을, 그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 제5호와 제7호, 제7조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	----

제출년월일 : 2007. 8.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하게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 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로써 학교환경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도모(안 제2조제5호 신설)
-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범위 내에서 자치구세의 ‘**5%**’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안 제3조)
-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①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②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③ 구 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의 2 신설)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해촉사유를 신설**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도모(안 제7조)
- 각 조문의 띄어쓰기와 단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

- 띄어쓰기

- 법령명 띄어쓰기 : 본 조례명, 제1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조와 조 제목은 붙임 : 제 1 조 (목적) ⇒ 제1조(목적)
- 항과 본문은 띄어 씀 : ①구청장은 ⇒ ① 구청장은
-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 각호 ⇒ 각 호

- 우리말 순화

- 제1조, 제2조제5호 : ‘ 및 ’ ⇒ ‘ 과 ’
- 제7조제①②③항, 제8조제③항: 1인(人) ⇒ 1명
- 제7조제④항 : 잔임기간 ⇒ 남은 기간
- 제9조제1호 : 당해년도 ⇒ 해당연도
- 제11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그렇지 않다’
- 제2조제6호, 제4조제①항제5호, 제4조제②항제5호, 제9조제4호,
11조제①항제4호, 제12조제①항제4호 : 기타 ⇒ 그 밖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7025호)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7.8.8~8.27)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본문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5호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를 “지역주민과 청소년이”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제3조중 “3%”을 “5%”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동항제5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제7조제1항중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를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로, 동조제2항중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를 “행정국장으로 한다.”로, 동조제3항중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교육위원 1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을”를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교육위원 1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명을”로 하고, 동조제4항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해당 직위상실, 전보, 퇴직, 사망 등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3항중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보조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 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호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동조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동항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동항제4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간은 띄어 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에 관한조례</p>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 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u>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u>고등학교이하</u> 각급 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4.(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p> <p>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p> <p>제 3 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5, 2006.03.09></p>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p> <p style="text-align: center;">----- 고등학교 이하 -----</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p> <p style="text-align: center;">-- 각 호 -----</p> <p>1.~4. (현행과 같다)</p> <p>5.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p> <p>6.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p> <p>7. 그 밖에 -----</p>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 5%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4 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 5 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1.~3.(생략)</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 각 호의 ----- -----</p> <p>1.~4.(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p> <p>② ----- 각 호의 ----- -----</p> <p>1~4(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p> <p>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 각 호의 ----- -----</p> <p>1.~3.(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5조의 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p> <p>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p> <p>3.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 6 조 (생략)</p>	<p>제6조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u>각 1인을 포함한 9인</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p> <p>③위원은 <u>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교육위원 1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u>을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 8 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②(생략)</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 1인</u>을 두되, <u>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u></p> <p>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p>1. <u>당해년도</u>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p> <p>2.~3. (생략)</p> <p>4. <u>기타</u>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각 1명을 포함한 9명</u> ----- -----</p> <p>② ----- <u>행정국장으로 한다.</u></p> <p>③ ----- <u>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교육위원 1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명</u>을 -----</p> <p>④ ----- ----- <u>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⑤ <u>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u></p> <p>1. <u>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u></p> <p>2. <u>위원의 해당 직위상실, 전보, 퇴직, 사망 등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u>간사 1명</u>을 두며, <u>간사는 교육경비보조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 과장이 된다.</u></p> <p>제9조(기능) ----- -----</p> <p>1. <u>해당년도</u> -----</p> <p>2.~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 (생략)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 11 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u>그리하지 아니한다.</u>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u>그렇지 않다.</u> -----
1.~3(생략)	1.~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4. <u>그 밖에</u>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 12 조 (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u>각호의</u>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 ----- <u>각 호의</u>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u>그 밖에</u>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3조 (생략)	제13조 (현행과 같음)